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1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·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(안 제3조의2)
- 나.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한 공개방법 세부적으로 규정(안 제5조)
- 다.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(안 제10조)
- 라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4조 등)

(사용·수익허가 → 사용허가, 감정평가업자 → 감정평가법인등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(정의), 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, 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, 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
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, 제27조(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의결(2022. 11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제3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
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
분) 중 “법 제92조”를 “구청장은 법 제92조”로, “계연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, “현
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”을 “현재액”으로, “하고, 그 양식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,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
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관리
계획”을 “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
중 “관리계획”을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0조의2제4항과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
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
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2천제곱미터

제14조제1항 중 “경우의 무상사용·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”을 “경우 기부채납한 시설물에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”로, “토지에 대하여 유상사용”을 “토지는 유상으로 사용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사용 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”을 “(사용허가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”를 “안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의 제목 “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대상)”을 “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)”를 “(사용허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”를 “(사용허가부의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 허가부”를 “사용허가부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
“행정재산에 대하여”를 “경우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사용·수익 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, 수탁자는”으로, “관리비용은”을 “관리비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마포구청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대부료의 납기)”를 “(대부료의 납부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납부기간”을 “납부기한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4항 단서 중 “다만, 매물품당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이상인 물품으로서 물품”을 “이상이고”로,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로 한다.

제91조 후단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9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

통해 공개하고,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④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-----
----- 공유재산관리계

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4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·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, 토지에 대하여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5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

획-----

-----.

⑤ 법 제10조의2제4항과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2천제곱미터

제14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 ① -----
----- 경우
기부채납한 시설물에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-----
토지는 유상으로 사용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무상사용기간) -----

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7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

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·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2. (생략)

제17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

용·수익허가 대상) 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수익계약으로 사용·수익허가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

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 무
- 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- 7. (생략)

----- 사용허가-----
-----.

제17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---

----- 사용허가 -----

-----.

② -----

사용허가 ----- 안 -----
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

용허가 대상) -----

사용허가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용허가) -----

- 사용허가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사용허가 -----
-

6. 사용허가 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

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0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

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

제19조(사용허가부의 비치) -----

사용허가부-----

-----.

제20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-

----- 사용허가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경우에-----
-----.

③ ----- 사용허가 -----

경우, 수탁자는 -----
----- 관리비용을 -----
-----.

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제21조(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)

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, 일시 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(생략)

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(생략)
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

-----.

④ -----
----- 인정하는 -----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)

① -----

-- 사용허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사용허가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
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
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

1. 마포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
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
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
록 하는 경우

2. ~ 5. (생략)

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
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포구의
귀책사유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
대부받은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
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
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
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
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또
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
제외한다.

제31조(대부료의 납기) ① 공유재산
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
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
이전으로 하고, 1년 초과인 경우
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
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
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70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
(생략)

-----.

1. 구청장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사용허가 -----

-----.

제31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① ---
----- 납부기한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0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91조(구유토지의 분필)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

④ -----

----- 이상이
고 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-----.

⑤ ----- 감정평가법인등
이 -----

-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1조(구유토지의 분필) 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
에게 의뢰한다.

제9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-----.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공유재산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재무과 손경화
연 락 처	02-3153-8605